

☒ 대학원 학칙 개정 신·구조문 대조표 (2021년 2월 9일 개정)

현행	개정
제11조(휴학) ① ----- ② ----- ③ ----- ④ ----- ⑤<신설>	<좌동> ⑤ 대학원장이 재난위기 상황으로 지정하는 당해 학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 특별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.
부칙	⑫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 제11조의 ⑤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☒ 대학원 내규 개정 신·구조문 대조표 (2021년 2월 9일 개정)

내규	현행	개정
8.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	제5조(수강과목의 철회)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(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)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, 지도교수, 대학원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	제5조(수강과목의 철회)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<u>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</u>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
	부칙	⑫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0. 재학조교에 관한 내규	제2조(종류 및 임무) 재학조교는 강의 및 실험·실습 등을 보조한다.	제2조(종류 및 임무) 재학조교는 강의, 실험·실습, <u>연구 등을 보조한다. 재학조교 활동은 주 2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</u>
	제4조(장학금 지급) ① 재학조교에게는 대학원에서 입학금, 등록금 및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② 연구등록생의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액은 소속 학과 정규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<신설> ④ <신설> ⑤ <신설>	제4조(장학금지급) ① 재학조교에게는 대학원에서 입학금, 등록금, <u>생활비 및 학업장려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② <삭제> ③ 교비 재원의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액은 소속 학과 정규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과 정규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④ 대학원혁신비 재원의 재학조교 장학금 수혜액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등록금과 사업에서 정한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과 정규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⑤ 교내·외 타장학금 장학생으로서, 입학금 및 등록금을 기수혜한 자가 조교활동을 한 경우, 추가로 재학조교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다.
	제5조(자격) 대학원 석사 4학기 이내, 박사 8학기 이내, 통합 12학기 이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② <신설>	제5조(자격) ① 대학원 석사 4학기 이내, 박사 8학기 이내, 통합 12학기 이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<u>다만, 이외 학기의 경우, 주임교수의 사유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재학조교로 임명될 수 있다.</u> ② 대학원혁신비 재원의 재학조교 장학금은 주당 20시간을 기준으로 재학조교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자에 한하여 수혜할 수 있다.
부칙		⑨ (시행일) 이 개정내규(제2조, 제4조, 제5조)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